

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

1. 개요

□ 배경

- 의사 집단행동('24.2월)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*이 발생하여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필요

*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「보건의료 재난」 위기경보 '심각' 단계 발령('24.2.23)

- ▶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, ▶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*

* 2.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후 2.27일부터 시범사업 시행

- 시행 초기 ▶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, ▶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 마련('24.3.6, 3.8 시행)

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선방향 보고(3.3)

-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등과 직역 간 업무분장 애로사항 건의('24.3.8~)에 따라 해당 업무범위 보완 필요

□ 법적 근거

-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(보건의료 시범사업)

* 유사 사례 : 비대면진료 허용

<보건의료기본법>

제44조(보건의료 시범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.

2. 시범사업 보완 내용

* 밑줄 친 내용이 보완된 사항임

<주요 보완사항>

- ❶ 심전도,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 원칙,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
- ❷ 병원 관계자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(3.8)시 업무범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추가 안내
- 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업무범위 복지부 승인 절차 안내(해당 의료기관)

□ 대상 인력의 범위

○ 간호사

□ 대상 의료기관

-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
-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·승인* 필요

* 의료기관 내 ^{가칭}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' 구성을 통해 설정된 ❶간호사 업무 범위(행위, 자격기준, 교육·훈련 등) 및 ❷관련 내부규정 등을 첨부하여 복지부 (간호정책과 : apple309@korea.kr)로 공문으로 제출

< 업무범위 작성 예시 >

진료지원행위			자격요건	비고
	Scope of practice	Practice		
1	0000	• 00000000000000000000	해당 술기 훈련 및 교육이수자	
		• 00000000000000000000	00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진료과(00000)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	
		• 00000000000000000000	00전문간호사 또는 00 술기 훈련 및 교육이수자	
		• 00000000000000000000	00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전담간호사	
		⋮	⋮	

□ 업무 범위 설정

○ 의료기관 장이 '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' 구성

- 주요 진료과 및 '가칭 전담간호사'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

○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

- 간호사의 숙련도, 자격(전문간호사, 가칭 전담간호사, 일반간호사) 등을 구분하여 업무범위 설정

* 일반간호사를 가칭 전담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

- 붙임으로 제시된 기준 참조(붙임 1)

- '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'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·지시는 금지

○ ▶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·운영, ▶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 문서화

- 관리·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, 최종적인 법적 책임*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

* 행정적·민사적 책임, 형사상 양벌 책임

□ 배치기준

○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*를 문서화

* 간호사의 정원·배치·업무·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

□ 교육·훈련

○ 의료기관이 교육·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

☐ 절차

- 별도 신청 절차 없음
- 추후 복지부에 관련 서류(업무범위 등) 제출 필요

☐ 법적 보호

-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*으로 보호

* 행정적, 민·형사적 책임

-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준수

☐ 자체 보상

-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, 자체 보상

☐ 복지부 내 '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' 구성 및 운영

* 정부(간호정책과), 의학회, 간호계, 병원계 등으로 구성

-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(자격 구분하여)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, 신속 판단·적용 지원
-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승인
- 보건의료위기 '심각'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

☐ 시범사업 모니터링

-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 추진

3. 추진 일정

☐ 3.18일부터 시행

□ **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**

-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[대법원 2005도5579]
-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[대법원 2012도16119]
- 사망 진단[대법원 2017도10007 판결]
-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·관여하지 아니한 경우[대법원 2010도5964 판결]
-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[대법원 2008도590 판결]

□ **추가 업무 수행 기준**

- 검사, 진단, 치료,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(의사결정) 그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아래의 대법원 판시 취지를 고려하건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

*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·교부를 지시한 이상,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·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[대법원 2019두50014 판결]

- 심전도, 초음파 등 행위*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

* 심전도, 초음파, 고주파 온열치료, 체외 충격파 쇄석술,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, 혈액 검체채취, 혈액 배양검사(Blood culture) 등

- 하이픈 표시(-) : 의료기관 내 '(가칭)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'에서 간호사 자격, 교육, 숙련도 등에 따라 수행가능 유무 논의 및 협의 후 설정(일반간호사의 경우 충분한 교육·훈련 선행 필요)
- X :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 업무
 - * (가칭)전담간호사 : 특정 분야, 특정 업무(예: 기술)를 훈련받은 간호사

진료지원행위			전문간호사	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		비고	
	Scope of practice	Practice		(가칭) 전담간호사	일반간호사		
1	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	• 문진, 예진,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	-	-	-		
		•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	-	-	-		
2	검사1	검체 채취	• C-line & PICC 혈액채취	-	-	-	
			• nasal swap culture	-	-	-	
			• suction tip culture	-	-	-	
			•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	-	-	X	
			• 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	-	-	X	
			• A-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	-	-	-	
			• 조직 채취	-	X	X	
			• 뇌척수액	-	X	X	
		천자	• 검체 나누기	-	-	-	
			• 골수천자	-	X	X	
• 복수천자							
3	검사2	• 요역동학검사	-	-	-		
		• wound swab, culture	-	-	-		
		• MMSE & CDR	-	-	X		
		• 사혈(phlebotomy) 성분 채집술 (apheresis)	-	-	X		
		• 직장 검체 채취(rectal swab)	-	-	-		
		• 전립선 마사지(G3)	-	-	X		
		• 직장 수지 검사(DRE)	-	-	X		
		• COVID-19 검사	-	-	-		
		• TTA(Trans Tracheal Aspiration) * 기관 천자가 아니고 기도 통해 채취	-	-	X		
		• ABGA 기계 사용 (중환자실, 회복실)	-	-	-		
4	치료 및 처치1	• 석고 붕대(cast, 통깁스)	-	-	X		
		• 부목(splint, 반깁스)	-	-	X		
		• 단순 드레싱 (일반, 시술 상처, 단순 욕창 등)	-	-	-		
		• 복합 드레싱 (catheter, tube, 수술 부위 드레싱 등)	-	-	X		
		• 봉합 (stapler 이용한 봉합)	-	-	X		
		• 발사(stitch out) 여부 결정	-	-	X		
		• 발사 자체	-	-	X		
		• 배액관 관리/장루관리	-	-	X		

진료지원행위			전문간호사	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		비고
Scope of practice	Practice			(가칭) 전담간호사	일반간호사	
	• 배액관 관리 및 제거 (흉강 배액관, 복강 배액관, 창상 등)	-	-	-	X	
	• 누공 관리 및 제거 (위루관 또는 장루관, 방광루관 등)	-	-	-	X	
5	치료 및 처치2	• 관절강 내 주사	X	X	X	
		• C-line 조영제 투여	-	-	X	
		• 방광조루술, 요로 전환술(cystostomy)	X	X	X	
		• 유치 도뇨관(foley catheter)	-	-	-	
		• 방광암 BCG 주입	-	-	X	
		• 각종 카테터 제거(CVC, PICC)	-	-	X	
		• C-line/PICC/PCD/PTBD insertion)시 환자 보조 및 keep	-	-	-	
		• C-line 제거	-	-	X	
		• PICC 삽입	-	-	X	
		• 중심정맥관 삽입	-	X	X	
		• 중심정맥관 관리(repair, removal 등)	-	X	X	
		• 중심정맥관 관리 (occlusion 해결, 혈액채취)	-	-	-	
		• 호흡치료(respiratory therapy, 인공호흡기 모드 설정 등)	-	-	X	
		• Chemoport needling	-	-	-	
		• Tracheostomy tube 드레싱	-	-	X	
		• T-tube 발관 및 교체	-	-	X	
		• 감염 욕창드레싱, 흡인드레싱(curavac)	-	-	X	
		•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-pad 제거	-	-	-	
		• 배액관(J-p, Hemo-vac) 삽입	X	X	X	
		• Retension enema	-	-	X	
		• S/O, I&D 등 침습적 처치	-	-	X	
		• Tube irrigation	-	-	X	
6	수술	• 대리 수술(집도)	X	X	X	
		• 수술 부위 봉합(suture) 또는 봉합 매듭(tie)	-	-	X	
		•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(헤모로락 등을 이용한 동맥 및 정맥의 결찰, GIA를 이용한 절단 등)	-	-	X	
		• 수술 보조 (scrub 아닌 1st/2nd assist)	-	-	X	
		• 골절 내고정물(screw, k-wire) 삽입 및 제거	X	X	X	
7	마취	•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/발관	-	X	X	
		• 처방된 마취제 투여	-	-	-	
		• 사전의사결정서(DNR) 작성	X	X	X	
8	중환자 관리	• 기관 삽관	-	X	X	
		• 기관 발관	-	X	X	

진료지원행위			전문간호사	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		비고
Scope of practice	Practice			(가칭) 전담간호사	일반간호사	
9	처방 및 기록	• 응급상황 심폐소생술	-	-	-	
		• 응급약물 투여	-	-	-	
		• L-tube 삽관	-	-	X	
		• L-tube 발관	-	-	-	
	처방 및 기록	• 전문의약품 처방	X	X	X	전문간호사, (가칭)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 (Co-Sign)
		• 위임된 검사·약물 처방, 프로토콜 하 검사·약물 처방	-	-	X	
		•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	-	-	X	
		•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	-	-	X	
		• 협진 의뢰 초안 작성	-	-	X	
		• 진단서 초안 작성	-	-	X	
		•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	-	-	X	
		•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	-	-	X	
		• 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	-	-	X	
		• 수술기록/마취기록 초안 작성	-	-	X	
10	환자 평가/ 교육	• 수술 수가 입력	-	-	-	
		• 치료 부작용 보고	-	-	-	
		• 치료 부작용 평가	-	-	X	
		• 검사 결과 추이 확인	-	-	-	
		• 특수장치 모니터링 (심전도)	-	-	-	
		• 특수장치 모니터링 (ECMO 등)	-	-	-	
		• 환자, 보호자 교육 및 상담	-	-	-	
		• 환자 자조모임 운영	-	-	-	
		•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	-	-	X	

<설명회(3.8) 질의사항 추가 안내>

연번	질의사항	전문 간호사	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		비고
			(가칭) 전담간호사	일반간호사	
1	수술 중 견인(수술부위 들어올리기, 벌리기 등), 실 자르기(suture cutting)	-	-	X	
2	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'수술부위 표시'	-	-	X	
3	항암제 정맥주사 투여	-	-	-	